



제354회국회(정기회)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 청 회



□ 일시 : 2017년 12월 4일(월) 14:30

□ 장소 :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본관 604호)

국 회 정 무 위 원 회

목 차

I. 공청회 개요	1
II.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의견	5
1. 김진화 사단법인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5
2. 이천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15
3.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3
4.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35
5. 한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위민 대표)	47
6.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59
※ 진술인 약력	71
III. 참고자료	73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안)	75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7
◦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개최-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17.9.4) ...	107
◦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개최('17.9.29) ...	127

I . 공 청 회 개 요

1 목 적

- 우리 위원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안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8288, 박용진 의원(2017. 7. 31)

3 일 시

- 2017년 12월 4일 14:30

4 장 소

- 정무위원회 회의장(본관 604호)

5 | **진술인명단**

- 김진화 사단법인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 이천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 한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위민 대표)
 -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 배석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6 | **진행방식**

-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간주되어 진행됨
 - 장소: 정무위원회 회의장(본관 604호)
- 공청회는 진술인의 의견발표, 위원과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함
 - 필요시 정부측 답변 청취
- 진술인의 선정, 발표 및 토론 시간은 간사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함
-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 및 방청인 질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함

7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진행순서	비 고
14:30 ~ 14:35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인사말씀 (취지 및 회의진행 설명) ○ 진술인 소개 	위원장
14:35 ~ 15:35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6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 금융위 부위원장 	진술인당 8분 정부 관계자 4분
15:35 ~ 18:00	14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응답 	

Ⅱ.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의견

진술요지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암호화폐 합리적 규제방안과 업계 자율규제안

김진화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1. 국내 암호화폐 시장 현황 등 배경

-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규모 약 100만 명 추산 (은행의 가상계좌 활성 계좌 수 근거)
- 하루 거래대금 1조원 ~ 6조원 규모
-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300조원 돌파
- 암호화폐(Crypto-currency)를 사칭하는 유사코인을 통한 사기 및 불법 금융다단계 급증
- 발행주체가 있고, 가격상승 및 시세차익을 약속하는 유사코인과의 구분을 위해, 엄밀한 개념용어인 '암호화폐' 명칭을 사용할 필요.
- 암호화폐는 1)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에 기반, 2) 알고리즘에 근거해 발행이 이뤄지고, 3) 오픈소스 규칙을 따르며, 4) 미래의 수익/이자 등을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음
-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 등의 사고도 이어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규제 공백으로 인해 거래소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

2. 금융위/정부합동TF 규제 방향의 문제점

- 모든 형태의 ICO(신규코인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금지
-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자)를 사실상 유사수신행위(자)로 취급하는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개정 방침
-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개정안 관련, 법으로 규율하는 유사수신행위의 정의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는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填)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암호화폐 거래/취급업의 경우, 원금반환이나 수익 등의 보장 및 여타 보전을 일체 하지 않음
- 유럽중앙은행 또한 2013년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가 '폰지사기(Ponzi Schem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천명

3. 해외 자율규제 현황

□ 스위스에서는 별도의 인허가 없이 암호화폐취급업을 영위할 수 있음. 다만, 스위스 금융당국(FINMA,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은 가상통화취급업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법(AMLA, Anti-Money Laundering Act)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취급업자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 건전성 규제를 받거나(DSFI, Directly Supervised Financial Intermediary)과 자율규제조직(SRO, Self-Regulatory Organization)의 회원이 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2017년 11월 현재 암호화폐취급업자 중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 규제를 받는 방식을 선택한 자는 없음.

□ 금융당국은 위 자율규제조직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법 준수와 관련된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음. 예컨대, 자율규제조직은 자금세탁방지법을 따르지 않는 회원에게 처분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음

□ 일본의 경우, 2016년 4월 자금결제법 개정안이 올해 발효돼 11개의 암호 화폐 취급업자들이 금융청에 등록. 제도화와 함께 일본암호화폐사업자협회가 결성되어 자율규제 병행

1) 영업자세·관리태세, 2) 거래규칙, 3) 취급가상화폐·ICO, 4) 회계기준 등의 세부항목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약 1년에 걸쳐 자율규제 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 일본 금융청과도 의견조정을 하고 있다고 함.

4. 자율규제 추진 현황

- 정부합동TF가 암호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이하 협회)가 지난 10월 19일 발기인총회를 열고 발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자율규제안 마련 중
- 자율규제안에는 1) 협회 운영 관련 규정, 2) 회원의 자율규제와 관련된 업무 규정, 3) 제재 및 분쟁조정 규정 등이 담겨 있으며,
- 업무 규정과 관련해서는 1)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2) 거래소의 금전 및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 규정, 3) 본인확인 규정, 4) 시스템안정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음
- 협회(준)는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위원회, 암호화폐 취급업자 운영위원회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2018년 1월 1일 이용자확인 대사시스템(강화된 본인확인 및 본인계좌확인) 적용을 시작으로 2, 3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자율규제안을 전격시행할 계획
- 자율규제안 주요 내용
 - 1)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 정립
 - 거래소는 이용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 기획 및 개선, 기타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의 수립 ▲이용자 보호 체계에 관한 관리·감독 및 검토 업무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 ▲이용자 보호 관련 관계 부서간 피드백 업무 총괄 ▲대·내외 이용자 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무 총괄 ▲민원 관련 평가 기준의 수립 및 평가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

- 암호화폐 취급업자는 민원관리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실행되도록 대
이용자 및 민원사례별 응대요령을 포함한 '민원업무처리 규정 및 매뉴얼
을 작성, 운영
- 회원사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금지 등 불공정거래의 규제를 포함

2)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금전 및 가상통화 보관 및 관리 규정

- 고객의 암호화폐 전용 월렛을 관리하는 것은 이용자를 안심시킬 수 있
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거래소가 자체 거래 등을 위하여 자산으로 보유
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이용자 월렛을 분리해 보관할 방침임
- 교환유보재산을 그 외의 회사의 재산과 분리하여 보관 및 관리하며, 분
리보관시 금융회사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한 제3자 예치 규정

3) 본인확인 규정

- 본인확인 절차는 이용자 회원가입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완료
하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 단계에 따라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야함. 본인확인 수준에 따른 출금한도 제한

4) 금융기관을 통한 대사확인

- 원화 입출금거래를 수행하려고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을 통
한 대사확인 방식을 추가 적용
- 고객에게 1개의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지정된 1개의 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만 입·출금 통제

5) 시스템 안정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임
직원에게 정보보호교육을 시행하며, 회사는 전산설비에 대한 취약점 분
석·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
- 은행이 요청하는 기관을 통해 연 1회 이상 취약점 분석·평가 실시

□ 기대효과

자율규제안이 적용되면 현재 난립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춘 건전한 사업자들로 시장이 구성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5. 제 언

-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의 경우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방향이 마련되어야 함
 -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12월 둘째 주경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할 계획. 테리 더피 CME회장은 지난 10월 31일 성명을 통해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 증가로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언급
 - CBOE홀딩스 최고전략책임자 존 디터스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과거 약 5년간 50배 상승하며 금과 원유 시장의 개설기와 비교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기관투자자의 참가와 규제 정비, 사이버 보안 확충 등을 고려한 결과 금융 파생상품 시장 창설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했다"고 밝힘

- 일본의 자금결제법 개정안(2016.04), 박용진 의원실 자금법 개정발의안(2017.06) 등과 같이, 암호화폐사업자 및 시장을 건전하게 구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제안이 바람직

- 중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자금결제법 제정 등으로 신기술적응력 및 금융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력 높여야

진술요지

이 천 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가상화폐의 실상과 정책적 대응

이천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1.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집약적으로 쓰여진 용례(use case)임.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 기술의 대두 이래 최고의 기술이라 평가되고 있음. 후자가 정보검색을 위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전자는 정보처리기술임. 그러나 그것은 아직 미완성된 기술임. 현재 그것은 가장 비싼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라 이야기됨. 인터넷이 대두한지 70년에 걸쳐 발전되어 왔는데 비해 블록체인기술은 대두 후 이제 겨우 10년 밖에 안 된 신기술임.

특히 보안성 면에서 불안이 작지 않음. 블록의 자료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장점과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과정이 해킹을 당하고 있다는 약점이 대비 됨.

그것은 또한 돈세탁 등 불법자금을 차단하는데 무력하고, 그것을 매개로 하여 조달된 자금을 원천으로 하는 투자를 생산적인 것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의 의문을 야기하고 있음.

2.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은 시기적으로 변화되어 왔음.

1단계 초국적 화폐(stateless money)

2단계 투기자산(speculative asset)

3단계 여러 이용 예 개발을 위한 실험도구

3. 우리나라에서는 애초에 그것의 초국적 화폐로서의 성격이 주목되었음. 그러다가 최근에는 투기자산이라는 점이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으로 되고 있음. 이는 우리사회에 상당한 투기성향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과 연관 됨.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대규모로 선물투기가 있었고 그것이 잠잠해진 이후 다시 세계 제일 규모의 가상화폐의 거래가 있었음.

이런 사정의 이면에서 우리는 3단계에서의 이용 예 개발에는 소홀해 왔음. 미국에서는 이것이 초점이라는 것과 대비 됨.

우리는 data analytics에 취약함,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필요한 algorithm이나 SW의 마련에 심각한 능력부족을 보이고 있음. 그 결과 이들과 연관되는 이용 예 개발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동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임.

4. ICO(initial coin offering)의 금지

우리는 중국 다음 두 번째로 ICO를 금지한 나라임

ICO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 주식공모)나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등과 같은 자금조달의 방도임. 주식공모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가 자신의 경제적 실력과 신용도와 준비상황, 조달한 자금의 투자계획, 투자의 성공시의 과실배분계획 등을 밝히고 약속하는데 비해 ICO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 아무런 약속이 없음. 또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에서도 투자자는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얻은 후 투자를 하는데 ICO에서는 투자사업의 위험성에 대한 벤처캐피탈 정도의 설명도 없음.

외국의 예에서 보면 ICO로 모은 자금을 다른 종류의 가상통화를 사거나 가상통화의 채굴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데 투자하고 있다고 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을 염두에 둔 어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는 점을 유념하고 볼때 ICO는 결코 바람직스러운 자금조달의 방법이라 하기 어려움. IPO 및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에 비해 불분명성이 너무 많음.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기업 중에는 비록 ICO방식으로 모은 자금이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를 밝히고 혁신적 실험을 하려는 기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

계획에 공감하는 투자가는 기꺼이 자본을 공여해 투자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음. 그러한즉 실제로 효율적이 될 여지를 검토도 없이 배제하고 투자 사업이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도라고 할 수 없음. ICO를 금지하는 것은 positive list system에서 positive list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에 다르지 않음. 우리는 규제완화나 규제개혁의 큰 기치 아래 negative list system으로 지향해 가야 한다고 이야기 해 왔고 그 이행단계에서 regulatory sand box나 no intention letter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경직된 분위기에서 라도 규제완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보려고 해 왔음. 그런데 ICO를 금지한다고 한 단순하고 나이브한 결정은 이러한 규제개혁을 향한 노력과 상반되는 것임. 반면 Canada는 ICO를 regulatory sand box 속에 넣어 관리하려고 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음.

5. 핀테크

2015년 우리는 핀테크의 나팔을 불었음. 민간에서의 호응도 뜨거웠음. 영업권이 수천억 또는 수조가 될지 모르는 은행업을 허가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종래 방식의 사고에 좌우된 탓으로 보임.

아무튼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아 핀테크에 대한 성과는 2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과 P2P대출이나 간편결제를 위한 사소한 핀테크 기업이 몇 개 나타났다는 것 정도에 불과함. 또 은행과 자본시장의 기업들을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6개월 여 전에 마련한바 있음.

인터넷 전문은행 및 그 주변에서는 그것의 기술 관련 주주들이 지분을 늘리고 지배력도 늘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어느 주주이든 불문하고 주주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은산분리원칙’을 한정적인 경우에서만이라도 완화해 줄 것을 요망해 왔음. 일종의 실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이

런 한정적 요망마저도 어느 국회의원 한 사람의 반대 때문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소문임.

그러한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대두하게 되자 핀테크에 대한 관심은 잦아들었음.

핀테크를 본격 추진하려고 하거나 제4차 산업혁명을 꾀해 보려고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data analytics를 제대로 수행해 내는 것으로 여겨짐.

이를 위해 15개가 넘는 정보보호 관계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나 이는 부지하 세월이 될듯함.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의 상황에서 아주 복잡한 사안을 내포하고 있는 이 법들을 일거에 개정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임. 나아가 이런 법들에 어떤 내용을 담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한 합일된 의견을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임.

당장 시급한 것이 빅 데이터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작년 행정부에서 작업해 내놓은 개인정보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고 기업들로 하여금 여러 실험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 가이드라인의 활용을 반대하는 입장은 이것이 법을 무시하고 우회하려는 것이라 하면서 행정부령으로 법을 우회하려는 것이라 단죄하고 반대함. 반면 미국은 이 가이드라인과 99%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 우리도 이 가이드라인의 실험을 종용하고 권유해서 여러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것이고 그것으로 빅 데이터 시대를 합리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data pooling을 장려하고 데이터의 효과적 사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정착시켜야 할 것임.

데이터의 마련과 더불어 그런 것을 최선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nalytics에서의 능력을 지니게 되어야 함. open source algorithm을 이용할 수 있기에 이 점에 대해 낙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실정을 모르는 것처럼 보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 올바른 분석능력을 갖추게 되어야 할 것임. 은행 등을 위한 API를 개발하기 위해 이미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것을 상기 하고 이러한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그 후속작업을 착실히 작업해 나가야 할 것임.

6. 결 어

regulatory sand box, 개인정보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등을 십분 활용해서 규제개혁을 착실히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

기업이 일자리를 마련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역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추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방해하거나 전시대적(on-line과 off-line 세상이 함께 섞여 가는 사정에 무감각한) 법조문의 개념법학적이고 형식논리에 매달리는 해석을 가지고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훼방 놓거나 족쇄를 채우는 일을 극력 경계해야 할 것임.

진술요지

정 순 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관련 공청회 발표문¹⁾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 론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지급기능을 강조하여 ‘통화’라는 말을, 그리고 은행권이나 주화와 달리 실물이 없는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되고 거래되는 점에서 ‘가상’이라는 말을 붙여서 쓴다. 가상통화만큼 긍정과 부정의 양극단을 넘나드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드물다. 첨단기술의 산물로서 기술과 금융의 결합을 통한 혁신적 지급수단 또는 핀테크의 상징물임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지만, 지급결제라는 금융 본래의 기능보다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투기적인 거래를 유도하는 또 하나의 ‘정체불명의 그 무엇’이라는 평가도 있다.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7세기 네덜란드를 휩쓸었던 튜립투기를 떠 올리는 사람도 있다.

국제적으로 FATF와 G7 등을 중심으로 투명성 강화와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에서 가상통화거래소를 운영하다 파산한 마운트곡스사의 신고파산채권은 2백조엔을 상회하는 규모라고 한다. 국내에서도 거래량의 급증과 함께 대규모 손실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는 국가별로 다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전제로 가상통화의 규제를 위한 입법을 했다. EU에서는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하 가상통화의 의의와 구조, 법적 성질, 외국입법례, 규제의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1) 본 발표문은 정순섭,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 지급결제서비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과 정순섭, 가상통화 무엇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연합인포맥스 2017.11.13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으로서 상세한 인용은 생략하였음을 밝혀둔다.

II. 의의와 기능

1. 의 의

발행인의 부재, 전자적 방식의 거래, 분산원장방식의 거래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암호통화(encrypt currency) 또는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라고도 부른다. 가상통화는 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전전유통가능성이 있으며 국가의 가치보장이 없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뉴욕주법상 가상통화는 “교환수단이나 디지털 가치저장방식으로 이용되는 모든 디지털단위”를 포함한다(23 NYCRR 200.2(p)). 중앙저장소나 관리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컴퓨팅이나 제조 노력의 결과물인 경우도 포함하지만, 온라인게임플랫폼에서만 사용되거나 고객보상프로그램의 일부이거나 선불카드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NCCUSL의 모델법안도 가상통화를 “(1) 교환수단이나 계산단위, 또는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고, (2) 법화로 표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화가 아닌 디지털 가치기록”으로 정의한다(URVCBA §102(23)(A)). 여기서 법화는 미국달러화에 한정되지 않는다.

일본의 자금결제법상 가상통화는 ① “물품을 구입하거나 차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 그 대가의 변제를 위해 불특정인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구입 및 매각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과 ②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위 (1)과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2조 5항 1호·2호).

2. 기 능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지급수단, 투자수단, 자금조달수단의 3 가지 기능이 논의되고 있다. 가상통화의 주된 기능은 지급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투자수단이나 자금조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방향은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전제로 하고 있다.

III. 법적 성질

1. 통화

일반적으로 법화는 법률상 강제통용력이 인정되는 통화를 말한다. 강제통용력의 법적 의미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했을 때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채권자에게 그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이전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법에서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법화의 수령을 거부하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채권자의 채권자지체가 된다고 표현한다. 당사자들 간에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것과 법률상 통화인 법화라는 것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화는 한국은행이 발권하는 은행권과 주화이다. 비트코인을 통화에 비유할 경우 BTC가 원이라는 통화단위, bitcoin이 은행권과 주화라는 통화, Bitcoin이 발권을 포함한 통화제도에 해당한다. 가상통화는 그 사용에 동의하는자들 간에만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점에서 법화라고 할 수 없다. 널리 당사자 간의 매매 등의 원인거래를 위한 지급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수단을 통화라고 할 때에는 가상통화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상 엄격한 의미의 법화나 통화에는 해당할 수 없다.

법화가 아닌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인식에 차이가 있다. 미국에는 비트코인이 통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 가지 판결이 존재한다. 비트코인의 통화로서의 성격에 대하여 2016년 플로리다주 법원은 이를 부정하였고, 2017년 뉴욕연방법원은 이를 인정하였다. 2013. 미국 법무부는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통화가 무인가 송금업에 관한 18 U.S.C. § 1960상의 자금에 해당하고,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규제가 비트코인관련 금융거래에도 적용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비트코인관련 업무를 등록하지 않고 수행한 개인을 기소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미국 국세청은 연방과세목적상 비트코인은 ‘재산’(property)이지 ‘통화’(currency)는 아니라고 판단하였

다(I.R.S. Notice 2014-21).

유럽사법재판소는 가상통화의 교환업무를 일종의 환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다.

2. 금융투자상품

가. 증권

가상통화는 발행자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행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발행자가 존재해도 지급책임이나 가치보장기능을 담당하지 않는 가상통화를 증권으로 볼 수는 없다. 발행자가 지급책임을 질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다만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구조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미국 등에서 ICO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크라우드펀딩이나 IPO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상통화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미국 상품거래소법(Commodity Exchange Act, CEA)상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동법상 상품(commodity)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미등록 비트코인옵션거래플랫폼이 문제된 사안에서 동법상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2015.9.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는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통화는 상품거래소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의 상품 정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일본에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는 “동일한 종류의 것이 다수 존재하고 가격의 변동이 현저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에 관한 파생상품거래(파생상품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투자자의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령에서 지정되면 자산의 파생상품거래로서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금융상품거래법 2조 24항 4호)고 한다.

국내에서는 가상통화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기초자산의 정의 중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4조 10항 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3. 물건/소유권

유체성과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요소로 하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미국과 일본의 논의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법체계와 재산제도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인터넷상 비트코인 거래소의 운영회사가 민사재생절차 폐지 후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동 거래소에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비트코인을 거래하던 이용자가 비트코인에 대한 환취권(파산법 62조)을 주장한 사건에서, 일본 법원은 “비트코인이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유체성 및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갖는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초한 환취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비트코인을 재산법상 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전통적으로 자산의 유체성을 강조해 온 재산법을 비트코인과 같은 무체자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결론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4. 강제집행

가상통화는 그 성질상 발행자가 존재하지 않고, 이전에 관한 기술적인 제약 등으로 사실상 집행불능재산으로서 재산은닉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도 실효성 확보는 곤란하지만 집행방법은 있다는 의견이 강하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가상통화에 대한 몰수와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US v 50.44 Bitcoins 사건에서 판사는 관련연방법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등록 송금업자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의 몰수를 권고하였다. 일본에서는 가상통화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전자기록정보’인 재산임을 고려하면 가상통화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적격이 있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채권집행의 예(민사집행법 167조 1항)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지난 9월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가상통화로 알려져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 이루어졌다. 몰수라는 부가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라는 매우 제한적인 쟁점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크다. 법원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의 대상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III. 외국입법례

1. 규제

가. 거래실태와 규제목적

가상통화거래는 원칙적으로 채굴을 통하여 만들어지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래소라고 불리는 교환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가상통화를 교환업자를 통하여 법화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 가상통화 이용의 전제가 되어 있다. 한편 가상통화와 법화의 매매등(매매 외에 그 중개·주선·대리, 매매등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금전 또는 가상통화의 예탁을 포함)에 관하여는 사업자의 파탄위험이나 매매에서 예탁된 고객자산의 보호,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이 주로 문제되고 있다.

나. 계좌와 업자의 존재

가상통화에도 계좌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지갑이 반드시 특정한 교환소에서 개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상통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FATF는 가상통화와 법화를 교환할 수 있는 교차점으로서의 교환소나 거래소를 규제한다는 방침을 제안하였다. 뉴욕주나 일본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규제대상을 교환업자로 한정할 것인지 그 이외의 업자로 확대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뉴욕주는 교환업자 이외에도 가상통화관련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교환업자로 한정하여 규제를 만들면서 향후 이용의 확대나 업무의 발전을 고려하여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다. 금융범죄

가상통화가 자금세탁이나 범죄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는 그러한 문제를 주로 살피는 국제기구나 국내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은 가상통화를 자금세탁방지법제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였다.

2. 미국

미국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규제논의는 2013년 실크로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2015년 주은행감독기관회의(Conference of State Bank Supervisors, CSBS)에서 모델규제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그에 앞서 뉴욕주는 가상통화업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하였다.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주 등에서도 각각 규제체계를 마련하였다. 2017년 통일주법위원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에서도 모델법안을 발표하였다. CSBS 모델프레임워크나 뉴욕주법과 마찬가지로 NCCUSL 모델법안도 가상통화 그 자체가 아니라 가상통화관련업무의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가상통화의 지배를 포함한 업무수행자에 대해서는 법화를 이용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와 같은 가상통화관련업무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장래의 고객에 대한 신뢰의 기초를 제공하고, 이러한 업무에 대한 은행업무의 제공과 규제상 확실성 및 감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EU

EU의 유럽은행감독청은 2013.9.부터 가상통화가 감시대상 혁신사례로 등장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EBA는 2013.12.13. 가상통화는 규제되고 있지 않으며, 그 위험은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소비자에 대한 공개경고를 발령하였다. ECB는 2012년 보고서에서 일부 가상통화는 특정한 가상통화공

동체에서 교환수단과 계산단위로 기능하고 있지만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하는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ECB는 2015년 보고서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는 경제학에서 통상적으로 정의되는 ‘완전한 형태의 금전’이라고 할 수 없고, 법적인 관점에서도 금전이나 통화라고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4. 일본

일본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2016. 5. 25. 성립 6. 3. 공포). 자금결제법상 가상통화 규제는 자금세탁규제와 이용자보호를 기본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가상통화에 관한 국제적인 권고 등에 따라 자금세탁방지과 이용자보호규정을 도입하고, 가상통화와 법화의 교환업자에 대하여 등록의무와 행위규제를 부과하였으며, 이용자가 예탁한 금전이나 가상통화 등의 분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일본의 자금결제법상 가상통화에 관한 규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법제화함으로써 오히려 부정거래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IV. 규제방향

가상통화를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외국에서도 정답을 찾을 수 없다. 그만큼 새로운 현상이고 움직이는 목표물인 것이다. 새로운 투자대상이 나타나면 기존의 규제제도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올바른 제도의 설계와 운용이다. 규제가 이렇게 작동되지 않으면 ‘입법의 불비’라는 말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상통화와 같이 법적성질이 규명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순한 입법의 불비라고 할 수 없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크게 보아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가상통화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안전한 투자수단’이라고 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권유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 국가가 보장하는 법화인 현금과는 다르다는 점이 분명히 설명되어야 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제하는 부정확한 수단을 이용한 거래도 제한되어야 한다.

둘째, 가상통화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 자금세탁이나 그 밖에 범죄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나 외국입법례를 고려하여 규제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가상통화와 법정통화가 만나는 지점인 교환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범위와 대상을 더 넓게 잡을 수도 있다. 가상통화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우려는 있다. ‘법률상 인정된 상품 또는 수단’이라고 하여 투기적 거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셋째, 오늘날 가상통화를 가능하게 했던 기술적 기반, 특히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자체와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금융거래의 기반이 되고 있는 기술인프라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중립적 평가와 규제에의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진술요지

차 현 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가상통화·블록체인 공청회 발표문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1. 가상통화의 개념

□ 주요국 정부 및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cryptocurrency)의 경우 현재 기반기술이 진보하는 과정인 데다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가상통화의 정의에 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등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음

— IMF 내부 조사연구 자료 중 가상통화를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 정의한 사례가 있음

* IMF,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s," staff discussion note, 2016.

— ECB는 통용력, 환금성 부족, 규제 여부,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상통화를 “중앙은행, 금융기관 및 전자화폐업체가 발행하지 않지만, 대체화폐로 쓰일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로 정의

* virtual currency can therefore be defined as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not issued by a central bank, credit institution or e-money institution, which, in some circumstances,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to money(ECB, 2015.2월)

□ 비트코인 및 기타의 가상통화(Alt-coin)에 대해서는 기존의 가상통화(사이버머니, 각종 포인트) 등과 구별하기 위해 최근 BIS CPMI와 주요국 중앙은행 등을 중심으로 암호통화(Cryptocurrency)로 통칭하는 추세

— 또한, 가상통화 등을 포함한 전자적 형태를 띤 모든 종류의 돈(money)에 대해서는 이를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로 통칭하는 추세

2. 가상통화의 성격

- 가상통화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제한된 영역 내에서는 지급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이용 가능하면서도 실제 시장에서는 대부분 투자 내지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는 ①발행기관에 의한 가치 보장이 없고, ②사용처*가 극히 제한적이며, ③가격 변동성**이 높은 점에서 볼 때 화폐 내지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2017.10.23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사용처는 전 세계 10,274개, 국내 126개 (coinmap.org)
 - ** 비트코인 가격의 일일변동성은 금년중 대체로 3~4% 정도로 금 또는 원/달러 환율에 비해 높은 수준(상세는 “3. 가상통화 시장 현황” 참고)
 - 현재 국내 법률에서 가상통화를 화폐나 지급수단, 금융상품의 정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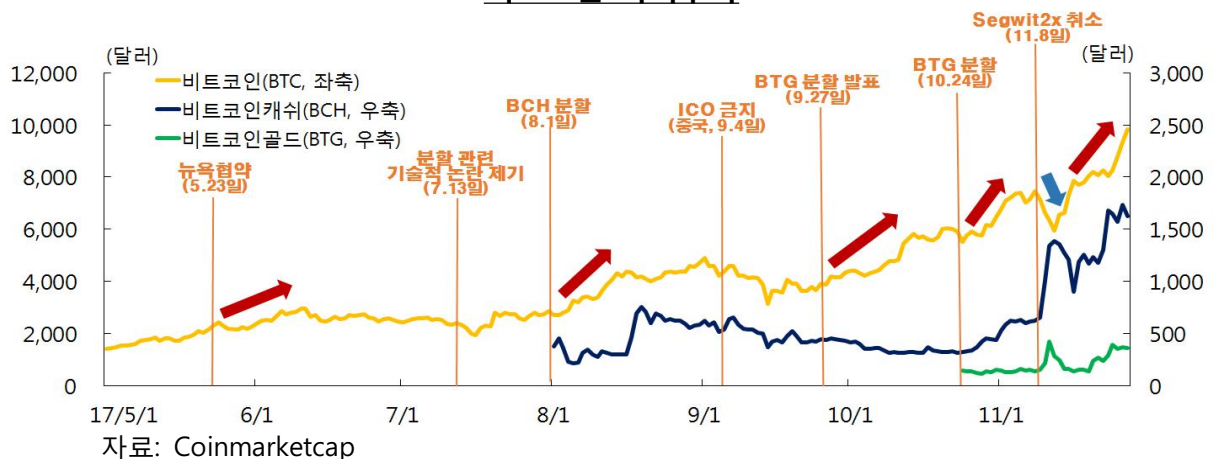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상통화는 유체물의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일반 상품(디지털 형태의 상품)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부 부처 및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2016.11월 설치)는 가상통화에 대해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지급결제에 관한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BIS CPMI(Committee on Payment and Market Infrastructures)도 가상통화를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과 유사”(similar in concept to commodities such as gold)한 것으로 인식

3. 가상통화 시장 현황

- 가상통화 거래 규모는 금년 5월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가운데 가격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중국의 ICO(Initial Coin Offering) 전면 금지 조치 등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두 차례에 걸친 분리(하드포크)에 힘입어 강세로 전환
 - 특히 최근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선물거래 상품 개설 검토 발표(10.31일)와 일본 기업회계기준위원회의 가상통화 회계기준 도입 계획 발표(11.23일) 등으로 가격이 더욱 큰 폭으로 상승

비트코인 가격추이



- 가상통화에 대한 가격 급등으로 비트코인외 기타 가상통화(Alt-coin)의 개발 및 거래 확대도 동반
 - 2017.11.12일 현재 세계적으로 1,208종의 암호통화가 거래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2,010억* 달러 수준
 - * 모든 암호통화를 비트코인으로 환산한 후 달러화로 다시 환산하여 산출
 -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리플, 라이트코인 등이 시가총액 상위 5개로서 전체의 85.0%를 차지

주요 암호통화 시세 및 시가총액
(2017.11.12일 현재)

시총 순위	명칭	시가총액 (억 달러)	가격(달러)				
			17.6월	2016년	2015년	2014년	
1	비트코인	1,020	5,950.1	2,636	568	272	527
2	이더리움	293	307.9	313.7	9.8	0.9	-
3	비트코인 캐시	285	1,388.9	-	-	-	-
4	리플코인	78	0.2	0.3	0.0	0.0	0.0
5	라이트코인	32	59.0	37.0	3.8	2.7	9.8

자료: Coinmarketcap.com

-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금년 중 비트코인 가격의 일일변동성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비트코인 가격의 일일변동성은 금년중 대체로 3~4% 정도로 금 또는 원/달러 환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

비트코인의 2017년중 일일변동성¹⁾

(단위 : %)

구분	1/4분기중	2/4분기중	3/4분기중	4/4분기중 (~11.27)
비트코인(해외)	2.9	2.9	4.0	3.4
비트코인(국내)	2.6	3.6	3.3	3.2
금(국내) ²⁾	0.4	0.5	0.5	0.3
환율(원/달러)	0.5	0.4	0.4	0.3

주 : 1) |금일종가-전일종가|÷전일종가(환율은 금일종가), 일일변동성의 기간중 평균
2) KRX 금시장 기준

4.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 대응 현황

(공통 입장)

-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경우 가상통화의 발행 및 유통 자체는 민간 자율(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의 영역으로 인식
 - * 가상통화의 발행 및 유통 네트워크(community)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이에 따라 가상통화의 거래 자체보다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가상통화 취급업자 규제), 조세형평(과세), 불법행위 근절(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부문을 중심으로 대응

- 일본을 제외하고 통합(단일) 입법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규제사안별로 유관 정부부처가 대응
 - 가상통화는 속성이 디지털 형태의 상품에 가깝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대체 통화 내지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을 일의적으로 규정하여 일괄적으로 규제하기가 곤란한 데 기인

- 주요국은 가상통화의 분권적 구조(분산원장 기반, P2P 거래)를 고려하여 국제적 정책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법화 및 공적 지급수단으로 오인될 가능성에 유의
 - 가상통화는 P2P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을 넘어 거래되고 있는 데다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개별 국가 차원의 입법만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를 기대하기 어려움
 - 대부분의 주요국은 기존의 통화질서나 금융시스템을 벗어나기 위해 등장한 가상통화에 대해 규제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이를 공인하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

(미 국)

- 미국의 경우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연방법 차원의 규제입법 움직임은 아직 없는 가운데, 뉴욕주를 비롯한 일부 주 정부 차원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
- 뉴욕주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한 범죄를 예방하고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 「금융감독규정」에 가상통화 관련 규정*을 신설
 - * 「Regulations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services Part 200. Virtual Currency」, 2015.6월
 - 동 감독규정에서는 사업자 인가제도(BitLicense),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고객확인 의무(KYC, Know Your Customer) 등을 규정
- 시카고상품거래소가 있는 일리노이주(금융감독국)는 가상통화를 원칙적으로 규제하지 않되, 현금 거래가 수반되는 가상통화 활용 사례를 제시(Digital Currency regulatory guidance, 2017.6월)하고 기존 법률(「Illinois Transmitters of Money Act*」)로 규율
 - * 지급수단의 발행·판매, 송금 및 환전 사업 등에 관한 규제를 목적으로 1995년 제정

(일 본)

- 일본의 경우 가상통화 중개업자(민간거래소)인 마운트곡스(Mt. Gox) 파산을 계기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자 「자금결제법」*을 개정(2016.5월 개정, 2017.4월 시행)
 - *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은행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소액 자금이체, 자금청산업 등에 관한 규제를 목적으로 2009.6월 제정(2010.4월 시행)
 - 가상통화를 이용한 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불법 자금 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적 규제요청이 커진 데다 이용자 보호 및 핀테크 발전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

- 다만, 동 입법은 가상통화를 공식 지급수단으로 인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임
- 개정 자금결제법에는 암호통화의 개념, 등록제(최소자본금은 일천만 엔), 고객재산 분리 보관, 분쟁조정장치, 고객앞 설명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
 - 2017.9월말 현재 11개사가 금융청에 가상통화 교환업체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동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

(중 국)

- 중국인민은행은 2013.12월 관계기관(공업정보화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보험감독관리위원회)과 공동으로 자금유출 등 암호통화(비트코인)의 파생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업계 관리 지침*을 발표
 - * The People's Bank of China and Five Associated Ministries Notice: Prevention of Risk Associated with Bitcoin(전신조례,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침, 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의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
 - 다만, 인터넷상에서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기관(금융기관 및 지급서비스업체는 사업 불가)에 대해 정부당국 앞 등록 의무를 부과
 -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등 거래 관련 모든 기관에 대해서도 고객 확인의무(KYC),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 불법의 심거래의 관계당국 앞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
- 최근에는 암호통화가 다단계 판매나 불법 자금조달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규 ICO를 중단시키고 ICO업체가 발행한 코인을 법화 또는 다른 암호통화와 교환하는 것을 금지*(2017.9월)
 - * Public Notice of the PBC, CAC, MIIT, SAIC, CBRC, CSRC and CIRC on Preventing Risks of Fundraising through Coin Offering, 2017.9월)

(스위스)

- 스위스의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금융감독당국(FINMA,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으로부터의 자율규제조직(SRO)*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영업이 가능
 - * 현재 약 12개의 자율규제조직이 존재(예: 금융서비스표준협회)
 - 가상통화 취급업자들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financial intermediary”에 해당
 - 금융감독당국은 자율규제조직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준수와 관련된 기준을 부과

5. 종합평가

-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는 가상통화의 성격, 기능, 시장 상황 및 주요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가상통화는 국내법상 규제 대상인 화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고 매매의 대상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서 규제 입법 추진시 신중히 접근할 필요
 - 또한, 가상통화 관련 소비자 피해는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및 다단계 등을 통한 금융사기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

- 범정부 차원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TF」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우선 유사금융 단속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도모해 나가면서 관련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임
 - 현재 정부(금융위)는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증권발행 형식의 ICO를 활용한 자금조달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 중임

- 현 시점에서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TF」의 대응방안과 같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 부문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면서 주요국의 규제정책 및 시장동향 추이를 지켜볼 필요

진술요지

한 경 수

변호사 (법무법인 위민 대표)

가상화폐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방안

한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대표)

1. 가상화폐와 관련된 최근 뉴스

- 1년간 1000% 급등...1비트당 10,000달러

<11월 29일 가상화폐 시황>			
09시 기준	단위: KRW		HTS코인 제공
비트코인(BTC)			
09시	전일 17시	등락폭	차액
11,944,000	11,456,000	4.26%	488,000
이더리움(ETH)			
09시	전일 17시	등락폭	차액
561,000	547,600	2.45%	13,400
대시(DASH)			
09시	전일 17시	등락폭	차액
733,700	718,100	2.17%	15,600
라이트코인(LTC)			
09시	전일 17시	등락폭	차액
113,850	106,550	6.85%	7,300
이더리움클래식(ETC)			
09시	전일 17시	등락폭	차액
38,200	33,200	15.06%	5,000
비트코인캐시(BCH)			
09시	전일 17시	등락폭	차액
1,781,500	1,813,000	-1.74%	-31,500
리플(XRP)			
09시	전일 17시	등락폭	차액
331	300	10.33%	31

- 日 3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포인트’ 한국 본격 진출

- 가상화폐 발행·유통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독일 소재 재테크 회사에 투자 시 6개월 400%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환불요청 시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허위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함.

■ ○○코인'이라는 회사는 몰타에 가상화폐 은행을 설립하고 국제거래소에 등재해 최소 15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호도,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계약하기 때문에 약정수익과 원금보장이 확실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함.

■ 마이닝맥스 ... 국내에서만 약 5000명에, 향후 수만 명에 달할 수 있는 사기투자 피해자, 그리고 2000억 원대로 드러나는 피해금액

■ 전세계 가상화폐거래소 거래량



■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 등 잇단 서버 중단 '안전성' 도마
 가상화폐 거래중단 '빗썸' 집단 손해소송 시작됐다

위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가 요즘 뜨거운 감자이다. 더구나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곧 또는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것처럼 회자되고,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유혹을 느끼고 있다.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간편한 지급방식과 편리한 자금이체 방식을 갖는 가상화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변동의 폭이 높고, 교환수단으로서의 강제성이 없으며, 공급 탄력성이 부족하여 투기적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며, 금융기관에 비해 거래소가 영세하여 거래소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자금세탁과 탈세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등 그 부작용도 매우 큰 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적 규제체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상태이다.

2. 가상화폐에 대한 현행법상의 규제 체계

현재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적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여기서는 편의상 조세 분야는 생략한다).

가. 거래소 자체에 대한 규제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그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다. 그러므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일시적 거래중단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빗썸의 이용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인 빗썸 사건의 경우 일시적인 거래 중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만일 거래중단이 장기간 되거나 사실상 운영을 중단해 버린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나. 불법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자에 대한 규제

불법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에도 크게 아래 3가지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법적 규제가 달라질 수 있다.

(1) 예를 들어 A가 B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권유를 하여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면 甲 회사가 A에게 1회성으로 추천소개비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이하 ① 유형), 甲 회사가 A에게 B의 실적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하 ② 유형). ① 유형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않고, ② 유형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2)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회사에 구좌(예를 들어 1구좌 300만원)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채굴에 사용되는 컴퓨터 1대당 가격(예를 들어 1대 가격 250만원)을 투자하지만 수익은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전체 채굴된 가상화폐

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투자지분 또는 컴퓨터 대수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받는 경우가 있고(이하 ③ 유형),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이 아니라 신규 가상 화폐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이하 ④ 유형)가 있을 수 있다.

(3) 불법다단계방식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과장하여 설명하거나(이하 ⑤ 유형), 투자원금 이상의 반환을 약정하는 경우(이하 ⑥ 유형)가 있고,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서 일반적인 투자가치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경우(이하 ⑦ 유형)가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조합의 경우($2 \times 2 \times 3$) 현행법상 어떤 규제가 가능한지 항목을 바꾸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현행법상 구체적인 법적 규제 가능 여부

가. 관련 법령

(1) 먼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填)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2)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와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정의)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제24조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나. 위 ①, ② 유형의 경우

① 유형에는 1회성 추천수당만 지급하므로 다단계판매라고 볼 수 없다.

② 유형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므로 다단계판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② 유형이 ④ 유형과 결합되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위 ③, ④ 유형의 경우

③ 유형의 경우에는 위 ② 유형과 결합되어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구좌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금전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가 형사처벌 규정이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수익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이상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④ 유형의 경우에는 가상화폐의 성질을 화폐로 보게 되면 방문판매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의 대상이 특정 가상화폐라고 한다면, 가상화폐의 성질을 미국 텍사스주 판결²⁾처럼 화폐로 본다면 ‘재화등’에 해당하지 않아 방문판매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라. ⑤, ⑥, ⑦ 유형의 경우

- ⑤ 유형에 해당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⑥ 유형에 해당하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 ⑦ 유형에 해당하면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소결

위와 같은 내용을 각 조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다단계판매조직	사실상 금전거래	유사수신	사기
① + ③ + ⑤	×	×	×	○
① + ③ + ⑥	×	×	○	×
① + ③ + ⑦	×	×	×	×
② + ③ + ⑤	○	△	×	○
② + ③ + ⑥	○	△	○	×

2) 참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2013. 7. 23. 세버와 BTCST를 상대로 “BTCST의 사업내용은 사기이자 폰지스킴이며, 세버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자의 비트코인을 사용하였으며 개인목적용을 위해서 유용했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텍사스주법원은 “비트코인은 투자계약상 금전에 해당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에 사용되거나 달러·유로·엔·위안과 같은 전통적인 화폐와도 교환할 수 있고, 각종 비용의 지출에 사용할 수도 있으며, 비트코인이 금전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대한 유일한 제한은 비트코인을 화폐로서 받는 장소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뿐”이라는 취지로 판결을 하였다(SEC v. Shavers, No. 4:13-CV-416, 2013. 8. 6.).

② + ③ + ⑦	○	△	×	×
① + ④ + ⑤	×	×	×	○
① + ④ + ⑥	×	×	○	×
① + ④ + ⑦	×	×	×	×
② + ④ + ⑤	×	×	×	○
② + ④ + ⑥	×	×	△	×
② + ④ + ⑦	×	×	×	×

4.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사업자 신고 이외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이다. 2017년 6월 기준 국내에서의 1일 총 거래금액이 약 1조 3,000만원에 달하는데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2014년 마운트곡스 사의 해킹과 내부 관리자의 횡령 등으로 인해 당시 한화 약 5,300억원이 증발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 약 12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이와 같은 사고가 언제 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적어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해당 정부 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다.

나. 판매방식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방문판매법상의 판매방식은 소비자가 재화등을 판매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소비자를 찾아오거나 전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총동구매를 불러 일으켜 판매가 이

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판매방식에 비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다단계판매방식은 판매방법 자체가 사행성과 연고판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판매방식과는 큰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치변동이 매우 커서 투기 또는 투자의 대상으로 기능하는 이상, 적어도 특수거래 유형에 속하는 방문판매법상의 판매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진술요지

홍 기 훈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관련 공청회 진술의견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I. 서론

1. 현재 국내 가상통화 산업의 문제점

- 가상통화 및 시장에 접근할 때 기술적이고 테크니컬 한 측면이 너무 강조되고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의 디테일을 강조하며 컴퓨터 공학적 측면의 기술적인 이야기들에 함몰되어 실제 적용에 대한 논의는 부족함

- 한국은행에서 지폐를 발행한다면 현재의 기술적 논의들은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음
 - 조폐공사의 기계들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 위조방지 기술에 대한 디테일들
 - 지폐를 누구에게 어떻게 조달하였는지에 대한 기록방법
 - 그러나 화폐경제학은 지폐의 활용이 더 중요함

- 기술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공학자들 (Tech) 의 영역이라 생각

- 기술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지만 Fin + Tech 에서 Tech 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문제

2. 금융업의 시각에서 보는 가상통화 시장과 규제

- 현재 가상통화 시장은 매우 원시적인 금융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 거래소: 상장요건 및 심사 부재, 조직적 증권 관리 미비, 위험관리 미비, 제한적 역할
 - 투자패턴: 매우 투기적, 내재가치 및 근본가치에 대한 분석 부재, 투자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
 - 자금조달방법: 프로젝트의 미래 가치보다 투기성 자산에 집중, 조직적인 정보 유통 부재

- 기술 중심의 구성원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라 생각

- 현재 금융시스템, 비즈니스 형태 및 규제는 대부분 과거에 인류가 겪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어 왔음
 - 금융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금융을 시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
 - 가상통화 관련 금융행위들이 혁신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은 18세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라 느끼고 있음

- 금융 산업이 아직까지 경험하고 극복한 문제들을 다시 겪자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음
 - 기존의 방식과 제도, 규제는 경험에 의한 이유가 있어서 존재

- 무조건적인 규제철폐는 훨씬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II. 가상통화의 규제적 이슈

- 투자자산 vs. 화폐
 - 과세문제 (예: 자본이득세)

- 가상통화 관련 비즈니스 규제 (예: 거래소)

- 자본조달 방식의 규제 (예: ICO)

- 규제의 목적이 산업 활성화인가?
 - 공정한 룰 제공
 - 투자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보호
 - 규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회적 가치 증진

- 가상통화 시장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가상통화의 사회적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음
 -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통화들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들이고 미래의 화폐경제의 주축이 될 존재들이라는 사실과 그 시장가치 증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 없이 주장만 존재
 - 가상통화의 미래사회에 대한 의의: 지급결제수단? 새로운 화폐 경제체제? 블록체인? 새로운 장부기록 방식?
 - 경제학적으로는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나 당연하게 주장되고 있는 현재 상황
 - 가상통화 시장가치 급등은 투기성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변동성 증가이지 투자자들이 가상통화의 미래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 잠재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님 (PCA를 이용한 계량적 근거)

III. 가상통화: 투자자산 vs. 화폐

왜 중요한가?

- 과세기준의 쟁점은 가상통화를 거래목적으로 구매하였는지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였는지에 있음
-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과세기준으로 큰 의미는 없음
- 법적 지위 부여에 대한 부담

회귀분석을 이용한 가상통화 수익률의 계량적 분석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정보를 분석하여 이용자 분류분석

현재 가상통화는 투자자산의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밝힘

가상통화의 딜레마

- 화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많아야 함
- 높은 변동성은 비트코인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 이용자가 증가
- 그러나 동시에 높은 변동성으로 인하여 화폐의 역할 수행이 어려움

IV. 가상통화 관련 비즈니스 규제

- 기존의 규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접근 가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음
- 가상통화 거래소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음: 사설 거래소이기 때문에 고민 필요
-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또한 이슈
- 사기를 적발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필요성이 있음

V.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본조달 규제

1. ICO 규제현황

- 중국의 ICO 금지
 - 금지 이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음
 - 시장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 가상통화 투자자들이 (정보) 효율적으로 가상통화 가격을 산출하지 않는다는 가설에 대한 근거

- 스위스
 - ICO 에 우호적이라 알려져 있었음
 - 그러나 2017년 9월에 SFMSA 는 이전 ICO 들이 스위스 자본시장 규제를 위반하였는지 조사한다고 발표, 조사 대상을 불특정 하였기에 전수 조사 가능성도 있음

- 미국의 SEC 는 ICO 에 연방정부 수준의 증권법을 적용시킬 권한이 있음을 시사

- 호주의 ASIC 는 2017년 9월에 ICO 의 요건들과 상황에 따라 합법일 수도 불법일 수도 있다고 발표

-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합동 TF 에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ICO 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입장을 내 놓음

-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혁신을 막고 4차 산업혁명에 뒤쳐지는 규제라고 비판의 목소리

2. ICO 의 목적

- ICO 의 목적은 자본조달
 - 새로운 코인을 만드는 것이 아님
 - Trowbridge Sidoti LLP 의 Amy Wan: “ICO에서 코인은 디지털 증권 증서와 같은 한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상징이다”
- ICO 는 클라우드 펀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음
 - 전통적 자본시장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운 위험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ICO 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그 기업의 성장의 과실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음

3. ICO 의 본질

- ICO는 주식형 클라우드 펀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음
 - 테크사업,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업에 적용되는 특수한 형태의 클라우드 펀딩
- 그러나 투자자의 성격이 클라우드 펀딩과 다름
 - 클라우드 펀딩의 경우 대부분이 소액투자자이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효과 존재
 - ICO 의 경우 개별 투자건의 액수가 높음
 - 즉 ICO 가 더 위험한 투자
- 투자의 성격과 리스크 패턴은 사모투자에 더 가까움

ICO는 IPO 인 척을 하는 사모투자의 위험구조를 가진 클라우드 펀딩

ICO는 혁신이 아닌 금융

4. ICO 정책 방향제안

-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 + 사모투자

- 각각의 규제들에서 ICO 의 특성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ICO 규제에 활용
가능
 -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자본조달 활동들을 활용
 - 효율적, 효과적

- 적격투자자 조건 적용
 - 실제 SEC에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 기술에 대한 이해 조항추가의 필요성 논의 중 (FINCONET2017)

- ICO 코인의 상장규제의 강도는 고민이 필요
 - 코인거래소의 규제와의 연결고리

- 사기는 별개의 문제

※ 진술인 약력

[가나다 순]

성명	주요경력	학력
 김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이드인스티튜트 이사 (주) 코빗 공동창업자·이사 現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세대 영문학과 중퇴
 이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現 서울대 명예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 박사
 정순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행법학회 부회장 現 금융위 비상임위원 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호주 멜버른대 법학 박사
 차현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주개발은행(IDB) 컨설턴트 한국은행 워싱턴사무소장 現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영학 석사
 한경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위민 대표 변호사 現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인문대 졸업 사법시험 43회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홍기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몬트리올 은행 Senior Analyst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現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 토론토대 경제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박사

Ⅲ. 참고자료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안)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개최-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17.9.4)
-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개최('17.9.2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88
----------	------

발의연월일 : 2017. 7. 31.

발 의 자 : 박용진·김해영·민병두
심상정·기동민·최명길
김관영·김두관·박영선
정인화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통화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통화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되,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함(안 제2조제23호 신설).
- 나. 가상통화취급업을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관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업을 정의함(안 제2조제24호 신설).
- 다.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요건 및 인가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신설).
- 라. 가상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통화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5 및 제46조의6 신설).
- 마.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의 제한, 가상통화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함(안 제46조의7부터 제46조의10까지 신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가상통화”란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24. “가상통화취급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를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행위(가상통화의 판매를 대행하거나 구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매매”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것. 다만,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가상통화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다.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라.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가상통화의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를 만드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마. 가상통화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가상통화를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제39조제1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각각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각각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로 한다.

제6장 및 제7장을 각각 제7장 및 제8장으로 하고, 제6장(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가상통화취급업

제46조의3(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① 가상통화취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가 만들어진 가상통화를 국내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가상통화를 구입하거나 가상통화취급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가
상통화취급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가상통화를 중개·교환·매매 등
을 하는 자(이하 “가상통화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
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상통화취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6조의4(인가의 신청 등) ① 제46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46조의3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가상통화예치금의 별도예치) ① 가상통화거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가상통화거래업자”라 한다)는 가상통화예치금(가상통화이용자로부터 가상통화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상통화예치금이 가상통화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통화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한 가상통화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통화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상통화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통화예치금을 인출하여 가상통화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상통화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가상통화예치금의 지급시기·지급장소, 그 밖에 가상통화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

⑤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상통화거래업자에게 예치받은 가상통화예치금을 우
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가상통화거래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가상통화예치금의 범위, 예치의 비율, 예치기관의 가상통화예치금
관리, 그 밖에 가상통화예치금의 예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의 비율은 가상통화거래업자의 재무상황 등
을 고려하여 인가받은 가상통화거래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6(가상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 ①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제46
조의5에 따른 예치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상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이하 “피해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피해보상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상통화이용자의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
증계약

②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제1항의 피해보상계약에 따른 지급보증액이
제46조의5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가상통화거래업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피해보상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6조의7(시세조종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통화의 매매·중개·
교환·발행·관리(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매
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
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
치로 타인이 그 가상통화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짚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
치로 타인이 그 가상통화를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짚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등을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가상통화의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가상통화를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등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가상통화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제46조의8(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가상통화의 매매·중개·교환·발행·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등의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6조의9(거래방식의 제한)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10(설명의무) ① 가상통화취급업자는 가상통화이용자(가상통화를 이용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대로 가상통화의 매매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 가상통화의 내용, 매매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상통화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가상통화취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가상통화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상통화취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가상통화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가상통화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의”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로 한다.

5. 제46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통화의 매매등에 관하여 그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6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을 영위한 자

2.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를 받은 자

3. 제46조의5 또는 제46조의6에 따른 예치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상통화거래업을 영위한 자

4. 제46조의8을 위반하여 자금세탁행위 등을 목적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교환·발행·관리한 자

5. 제46조의9를 위반하여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한 자

6. 제4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통화의 매매를 권유하면서 가상
통화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46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매매등의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
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22. (현행과 같음)</p> <p>23. <u>“가상통화”란 교환의 매개 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u></p> <p>24. <u>“가상통화취급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가. <u>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를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행위(가상통화의 판매를 대행하거나 구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매매”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것. 다만, 재화나</u></p>

용역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가상통화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다.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라.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가상통화의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를 만드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마. 가상통화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가상통화를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제39조(감독 및 검사) ①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제39조(감독 및 검사) ① -----

-----금융회사, 전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

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

-----.

②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

-----.

③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권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4. (생략)
- <신 설>
<신 설>

자

1. (현행과 같음)
2.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

3. 4. (현행과 같음)
- 제6장 가상통화취급업

제46조의3(가상통화취급업의 인

가) ① 가상통화취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가 만들어진 가상통화를 국내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가상통화를 구입하거나 가상통화취급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가상통화취급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가상통화를 중개·교환·매매 등을 하는 자(이하 “가상통화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상통화취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인가의 신청 등) ① 제46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

<신 설>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46조의3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가상통화예치금의 별도예치) ① 가상통화거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가상통화거래업자”라 한다)는 가상통화예치금(가상통화이용자로부터 가상통화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

<신 설>

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상통화예치금이 가상통화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통화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한 가상통화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통화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상통화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통화예치금을 인출하여 가상통화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상통화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가상통화예치금의 지급 시기·지급장소, 그 밖에 가상통화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상통화거래업자에게 예치받은 가상통화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가상통화거래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가상통화예치금의 범위, 예치의 비율, 예치기관의 가상통화예치금 관리, 그 밖에 가상통화예치금의 예치에 필요한

<신 설>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의 비율은 가상통
화거래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받은 가상통화거
래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6(가상통화이용자 피해
보상계약) ① 가상통화거래업
자는 제46조의5에 따른 예치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상통화이용
자 피해보상계약(이하 “피해보
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피해보상
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
약
2. 가상통화이용자의 피해보상
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
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
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②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제1항
의 피해보상계약에 따른 지급
보증액이 제46조의5에 따라 예
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달된

<신 설>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피해보상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7(시세조종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통화의 매매·중개·교환·발행·관리(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매매등이 상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통화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짝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통화를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짝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등을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가상통화의 매매등이 상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가상통화를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 설>

변동시키는 매매등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가상통화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제46조의8(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가상통화의 매매·중개·교환·발행·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등의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

<신 설>

<신 설>

하여야 한다.

제46조의9(거래방식의 제한) 가상
통화취급업자는 「방문판매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
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
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
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10(설명의무) ① 가상통
화취급업자는 가상통화이용자
(가상통화를 이용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를 상대로 가상통화의 매매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통
화는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
가상통화의 내용, 매매에 따르
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상통화이용자
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야 한다.

② 가상통화취급업자는 제1항
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가상통
화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야 한다.

③ 가상통화취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가상통화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가상통화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4. (생략)

<신설>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49조(벌칙)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46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통화의 매매등에 관하여 그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

<신 설>

②·③ (생 략)

<신 설>

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6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를 받
지 아니하고 가상통화취급업
을 영위한 자

2.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
로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를
받은 자

3. 제46조의5 또는 제46조의6에
따른 예치 또는 피해보상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상통
화거래업을 영위한 자

4. 제46조의8을 위반하여 자금

세탁행위 등을 목적으로 가상
통화를 매매·중개·교환·발행·
관리한 자

5. 제46조의9를 위반하여 방문
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
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한 자

6. 제4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통화의 매매를 권유하면
서 가상통화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

제5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④ ~ ⑥ (생략)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징역형
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51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
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략)

<신설>

④ (생략)

-----.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46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매매등의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④ (현행과 같음)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 생산적 금융 • 신뢰받는 금융 • 포용적 금융
	보도	2017.9.4.(월) 조간	배포	2017.9.1.(금)
책 임 자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주 흥 민(02-2100-2970) 금융위 FIU기획협력팀장 손 성 은(02-2100-1730)	담 당 자	김 민 하 사무관 (02-2100-2972) 이 영 민 사무관 (02-2100-1722)	
	국조실 금융정책과장 이 동 엽(044-200-2190)		김 정 훈 서기관 (044-200-2191)	
	기재부 외환제도과장 이 형 렬(044-215-4750)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송 진 혁(044-215-4230)		유 예 림 사무관 (044-215-4751) 조 윤 석 사무관 (044-215-4232)	
	공정위 특수거래과장 한 경 중(044-200-4430)		정 은 애 사무관 (044-200-4438)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박 성 훈(02-2110-3167)		김 봉 진 검사 (02-2110-3759)	
	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천 지 현(02-2110-1567)		황 선 철 사무관 (02-2110-1525)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한 경 수(044-204-3202)		김 필 식 사무관 (044-204-3222)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장 우 성(02-3150-1605)		김 상 순 팀장 (02-3150-0252)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차 현 진(02-750-6615)		김 정 규 팀장 (02-750-6639)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 최 성 일(02-3145-7420)		김 용 태 팀장 (02-3145-7425)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대응센터장 김 주 영(061-820-1830)		윤 석 응 팀장 (02-405-5563)	

제목 :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개최 -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

- ◆ 오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를 개최
- ◆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실행가능한 조치 신속 추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규제 신설
- <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
 - ✓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 강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자율규제 권고
 -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 <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
 - ✓ 「가상통화 합동단속반」 구성 등 범죄 단속·처벌 강화
 - ✓ 고객정보 유출사고 조사제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체계 구축

1. 회의개요

- 금일 '17.9.1.(금) 10:3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개최

- 일 시 : '17.9.1.(금) 10:30
- 장 소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 석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서비스국장, FIU기획행정실장, 전금과장
 - (관계기관)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을 언급
 -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상통화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함
 - 아울러, 금일 관계기관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대응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당부하였음

< 주요 대응방향 >

①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실행가능한 방안으로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도 강화할 예정
 - 아울러,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투명성도 확보해나갈 계획
 -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특정금융정보법), 실명확인(금융실명법) 규제를 적용(17.7월)하는 만큼,
 - 가상통화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규제도입을 추진할 계획(특금법 개정)
 -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사항을 취급업자가 마련할 자율규제안에 반영토록 권고 추진
-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도 정비해나갈 계획
 -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화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
 - 한편, 가상통화의 가치를 정부·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 또한,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조달(ICO)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

②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범죄·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호히 대응
 -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단속기간 동안(~'17년말) 단속을 실시하는 등 범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
 - 해킹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
 -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조사하고,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과 상시 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도 구축할 예정

③ 규제·감독 문제 검토

-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

3. 향후일정

-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분기별로 개최('17.9월, '17.12월)하고,
 - 관계기관 실무점검회의(주제: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를 매달 개최하여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

※ 별첨1 :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관계기관 합동)

별첨2 : 가상통화 거래 유의사항

① 매우 큰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

- 가상통화는 그 가치가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정부·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
- 또한,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가격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본인의 책임 하에 거래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②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에 주의

- 최근 유사코인 투자시 고수익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
- 비트코인 등 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반면,
-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고수익을 약속하며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기업체이며,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요망됨

* 수원지방검찰청 배포 보도자료 참조('16.6.20일, '16.7.27일, '17.6.22일)

③ 해킹 및 암호키(Private Key) 유실 위험에 노출

- 이용자가 가상통화를 직접 보관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는 경우에도 가상통화 보관지갑 해킹으로 이용자자산이 탈취될 위험이 존재함
- 또한, 가상통화 거래시 필요한 암호키(Private Key)가 유실되는 경우 해킹 없이도 이용자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음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현황 및 대응방향

2017. 9.

관계기관 합동

I. 그간의 경과

1. 가상통화 등장 배경

◇ 가상통화*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주요 국제기구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한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를 의미

* 용어의 출처는 불분명하나,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암호화폐(crypto currency) 등의 용어가 혼용되다가 최근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로 통용하는 것이 일반적

○ '09.1월, 최초의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등장 이후 **이더리움, 리플** 등 다수의 가상통화(약 **850여개**)가 개발되어 유통중

* 나카모토 사토시는 '08.11월 보고서(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를 통해 금융기관 개입 없이 P2P 네트워크를 활용한 결제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

①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제도에 대한 불신·반감으로 나타난 **반작용**(Occupy Wall Street 운동)의 영향으로 등장

○ 정부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를 구현**

*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거래시마다 이를 대조해 위조를 방지하는 분산형 시스템

② ICT 발전에 따른 핀테크 등 새로운 첨단기술에 대한 기대

○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신선한 충격과 낙관적 기대로 투자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

③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대안**(alternative investment)’의 하나로 인식

○ 언론에서도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거뒀다는 사례들이 보도**

➔ 가상통화의 성격 및 효용에 대해 균형적인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규제·감독 필요성 여부를 차분하게 검토할 필요

2. 주요국 대응현황

□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감독·규제에 대해 각국이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아직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음

① 가상통화 관련 범죄* 단속 및 자금세탁방지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

* 美 FBI는 비트코인으로 마약·총기를 거래한 웹사이트 실크로드 폐쇄('13.10월) 랜섬웨어 '위너크라이'는 피해자에게 복구비용으로 비트코인 요구('17.5월),

< 주요국 자금세탁방지 규제 사례 >

- 미국*·캐나다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법률상 "화폐서비스업자(MSB)"로, 프랑스는 "결제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 자금세탁방지 규제 적용 지침 발표('13.3월)
- EU 집행위원회도 가상통화 거래업자, 지급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하는 지침서 초안을 제출·논의중('16.7월)

② 과세와 관련, 미국·영국·독일 등 다수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국가별로 기존 자산 관련 세법을 적용중

-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입장

* 미국, 영국, 일본 : 부가가치세 미부과 / 독일, 싱가포르 : 부가가치세 부과

③ 한편, 美증권거래위(SEC)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Token** 공모발행을 증권법상 증권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17.7월)

* 이더리움 플랫폼을 활용한 분산화된 자율조직(The DAO)이 11.5억 DAO Token을 발행하고, 1,200만 이더리움(ETH)을 조달('16.5월)

- 美상품선물거래위(CFTC)는 **LedgerX**社에 대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청산기관으로 인가('17.7월)

④ 영국 등 다수 국가들은 아직까지 가상통화와 관련한 별도의 감독·규제체계의 도입 없이 모니터링중

- 가상통화 취급업자 직접 규제(일본, 美 뉴욕주), 가상통화 유통·거래 제한(중국, 러시아) 등의 입장을 취하는 사례도 존재

➔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상통화 투자의 여러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부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규제에 나서지는 않고 있음

* 美 증권거래위원회('13.7월), 美 금융소비자보호국('14.8월), 독일 연방금융감독청('14.2월) 등

II. 가상통화의 성격

□ 가상통화는 정의 및 요건상 화폐, 통화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임

- ① 화폐(money)는 상품의 교환·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인 교환수단(예: 소금, 금, 은행권 등)으로, 3가지 본질적 기능을 지님
 - 가상통화는 ① 지급의 제한, ② 높은 변동성, ③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화폐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IMF, '16.1월)

※ 화폐의 3가지 본질적 기능

- 교환의 매개(medium of exchange) : 화폐는 임의의 재화와외의 교환에서 반드시 수령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구매력을 보유
 -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의 활용 사례 및 거래규모가 제한되어 교환의 매개체로 한계가 있으며, 거래목적보다는 주로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 가치척도(unit of account) : 화폐는 개개의 상품과 가치를 통일적으로 표현하는 재료가 됨. 즉, 모든 재화서비스의 가치를 가격으로 표시하는 역할을 수행
 - 가상통화는 높은 가격 변동성, 불확실한 시장가치 등으로 가치척도로 사용 곤란
- 가치저장(store of value) : 화폐는 언제, 어떤 재화·서비스에 대해서도 대가로 수령될 것이 기대되므로,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하며 자산의 한 형태로 보유됨
 - 가상통화는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고, 향후 거래에 활용될 것이라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존하므로 장기적으로 가치를 저장하는데 한계

- ② 한편, 통화(currency)*는 거래에서 지급·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지닌 은행권과 주화를 의미(현금통화 외 예금통화도 포함)

* 소재가치(素材價値)를 중시했던 금속주의와 달리, '일반적 교환 내지 유통수단'으로의 화폐의 본질을 중시하는 명목주의에서 화폐와 통화의 개념은 구별하기 어려움

- 통화는 법률에 따라 법화의 지위가 부여되고 강제통용력을 가지나, 가상통화는 민간에 의해 개발되고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용

➔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려움

* '가상통화'라는 용어도 법정통화, 화폐라는 인식을 가져오므로 신중할 필요

- 다만, 그 가치는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정부·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

Ⅲ. 가상통화의 효용 및 예상되는 문제점

1. 가상통화의 효용

-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통화는 중앙집중형 거래 시스템 대비 낮은 비용, 빠른 처리속도, 보안성 측면에서 장점 보유
 - 다수 중개기관이 개입된 기존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처리시간도 단축 가능
 - 또한, 모든 정보가 집중된 중앙서버 및 이를 관리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내·외부적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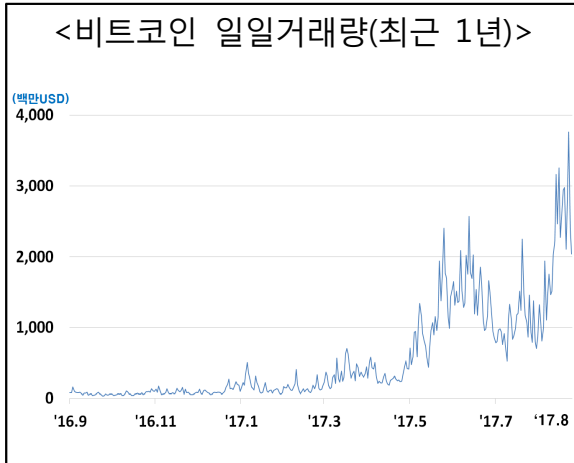
2. 가상통화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 가상통화는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
 - ① 투기적 수요, 가상통화 분리(하드포크)*,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손실발생 가능
 - * '17.8월 블록체인 업그레이드로 비트코인(BTC)과 신설된 비트코인캐시(BCH)로 분리, '16.7월 해킹 사건 이후 S/W를 업그레이드한 이더리움(ETH)과 기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재상장시킨 이더리움클래식(ETC)으로 분리
 - ② 가상통화의 익명성을 악용해 마약거래, 랜섬웨어·해킹 대가 등 불법거래에 이용되거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
 - * '빅코인'에 대한 투자를 빙자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140억원대 자금 편취('17.6월)
 - ③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 해킹이나 암호키 유실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고객자산 탈취 등의 사고 발생
 - *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야피존'은 전자지갑 해킹 사고로 약 55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탈취('17.4월), '빗썸'은 직원 PC가 해킹되어 약 3만여명의 고객정보 유출('17.6월)

3. 가상통화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불가피

□ 최근 가상통화 관련 범죄와 소비자 피해가 빈발

- ① 마약거래, 랜섬웨어 등 불법거래나 유사수신·다단계와 같은 사기범죄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
 - 현재 규제가 미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통화의 특성을 악용한 자금세탁, 탈세 등 추가범죄도 우려되는 상황
- ② 교환의 매개로 개발된 가상통화가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단순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
 - 당초 개발 목적인 교환의 매개로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인 반면, 최근 거래량·변동성은 과도한 양상



출처: coinmarketcap.com (전세계 거래량·가격 기준)

➔ 가상통화가 당초 개발목적인 교환의 매개기능을 넘어서서 각종 범죄 또는 단순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할 필요

IV. 대응방향

◆ 가상통화의 성격과 효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을 정립할 필요

①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거래는 금융거래는 아니나 유사금융거래로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 필요

-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보호를 위해 실행가능한 조치들은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 유사수신 등 유사금융거래에 대한 사각지대(loophole) 보완, 자금세탁방지 규제 등 새롭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규제를 신설

③ 아울러,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범죄·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호히 대응

-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단속기간 동안(~17년말) 단속을 실시하고, 해킹 등 고객 정보 유출사고도 철저히 조사·제재

-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체계도 구축 추진

④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금융업 규제 문제, 과세 문제 등은 추후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

1.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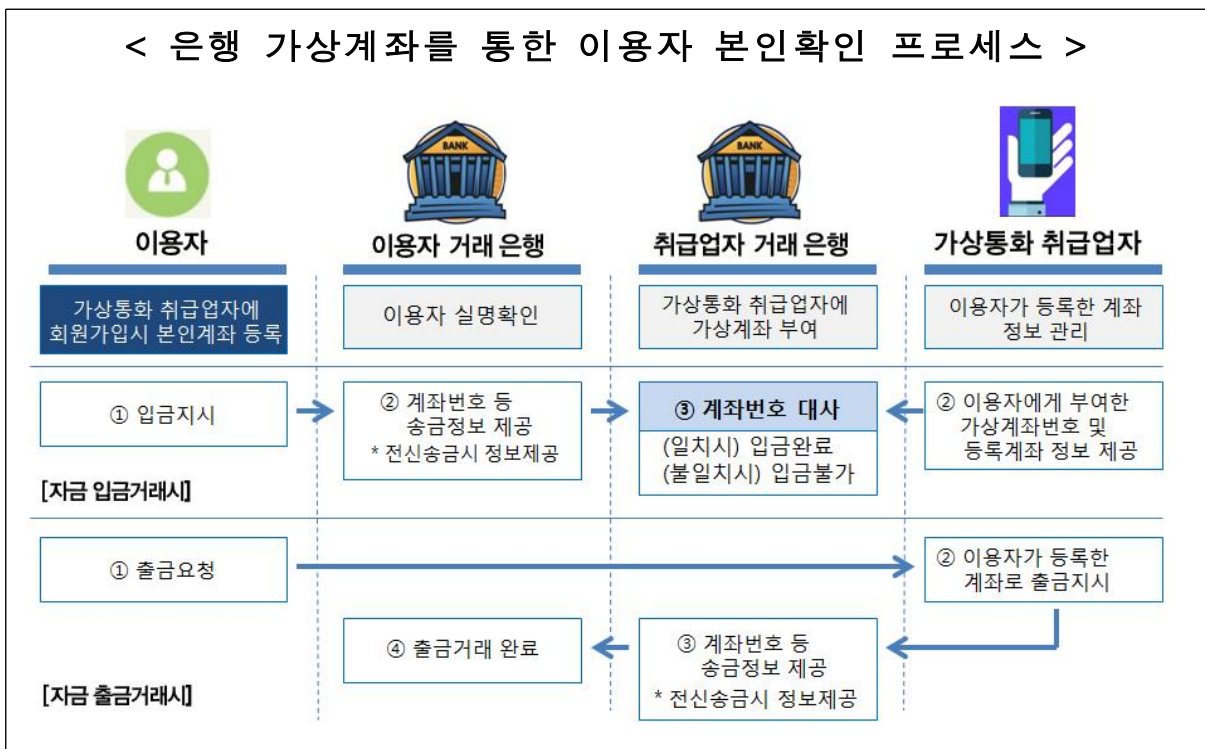
단기 실행방안

①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 등 거래투명성 강화 (금융위금감원)

①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강화

-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
- 취급업자가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은행의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추적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정보(성명, 이용자의 은행계좌, 취급업자가 부여한 가상계좌번호 등)를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는 방안 추진



※ 은행의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시 준수사항(안)

-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 본인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사절차 등을 마련
- 이용자 본인확인 등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계좌 거래중단을 고려
- 이용자가 회원가입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등록된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 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관리

②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를 강화

-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 이용자의 입·출금 거래시 자금세탁 행위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
-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수집된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을 은행에 안내하고(17.9월), 동 유형과 관련하여 은행의 의심거래보고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

※ 은행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심거래유형을 보완하여 추가 안내(17년말)

※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 예시

-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을 분산출금하거나 다수인에게 송금
-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가상계좌에 거액의 현금을 빈번하게 입금

* 은행의 거래상대방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임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유사업종(전자상거래업, 기타 소매업 등)도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상기 ①·② 조치들을 통해 i) 가상통화거래의 시작·종결(원화 입·출금) 시점의 자금추적이 용이해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의 기반이 마련되고,

- ii)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포싱, 대포통장 등 범죄악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②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시 거래투명성 확보 (기재부 등)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 강화 및 거래투명성 확보

* 기재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

- 소액해외송금업 등록단계에서 송금방식(가상통화 활용여부 등) 등록, 매일 한은에 거래내역 보고, 정산내역 기록·보관 등 실시

③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추진 (금융위)

-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특정금융정보법), 실명확인(금융실명법) 규제를 적용('17.7월)

- 이 경우 가상통화를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도 적용

- 가상통화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규제도입 추진(특금법 개정)

* 카지노 사업자는 특금법('07년) 및 시행령('08년) 개정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과 칩의 거래를 각각 '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에 포섭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

※ FATF(자금세탁방지기구)는 '15.6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의무 및 감독당국의 감독·제재 필요성 명시

④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율규제 마련 권고 (금융위·금감원)

-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사항을 취급업자가 마련할 자율규제안*에 반영토록 권고

* '17.하반기중 협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영업행위준칙 등 마련 예정

※ 가상통화 취급업자 자율규제(안)

- 거래량 폭증에 따른 서버다운 등 전산문제 개선을 위한 서버 확장, 시스템 개선
- 고객정보 및 예치자산의 구분관리, 암호키(private key) 안전관리 방안 마련*
* 예: 별도의 저장매체에 보관(cold storage), 다중키로 관리(업체 외 제3의 기관에 분산보관)
- 민원응대를 위한 콜센터 등 고객센터 확장

< 스위스의 가상통화 자율규제 사례 >

-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금융당국(FINMA)의 인가 없이 자율규제조직(SRO)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영업 가능
- 약 12개의 자율규제조직이 존재하며, 대표적인 기관인 금융서비스표준협회(VQF)에 Bitcoin Suisse, BTC Express, Bity 등의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가입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5]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금융위)

-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근거를 명확화*(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정의조항 정비·확대)

* (현행) 원금 또는 원금초과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예·적금, 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행위를 금지·처벌

→ (개정 예시) 원금 또는 원금초과금액이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가상통화 거래 또는 가상통화를 가장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행위도 대상에 추가

-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

* (현행) 5년 이하·5천만원 이하 → (개정안) 10년 이하·5억원 이하

6] 가상통화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금융위)

- 가상통화의 가치를 정부·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기 어려움

⇒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 (예)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를 취득·교환·매매·중개·알선·보관·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 가상통화의 매매·중개·알선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소비자보호,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도입

* (예) 고객자신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다단계·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의무 등

- 가상통화 거래시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처벌

* 입법 이전에 취급업자가 이용자에게 신용공여하는 부분도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여부 조사

-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조달(ICO)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

2.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① 「가상통화 합동단속반」 구성 등 범죄 단속처벌 강화 (검찰·경찰·공정위 등)

- 경찰·금감원 합동으로 「(가칭) 가상통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가상통화 관련 다단계·유사수신 등 사기범죄에 대해 집중단속기간(~17년말)을 정하여 단속 실시
- 또한, 피해규모·범죄수법·서민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구속수사(검찰)
 - *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법」 위반 및 사기죄 등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
- 다단계공제조합(직접판매·특수판매공제조합)과 협조하여 다단계 방식 위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공정위)
 - 다단계공제조합을 통해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의뢰
 - * 다단계공제조합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설치하고,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 수준이 높은 제보 건에 대해 다단계공제조합에서 50~2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가상통화 거래 추적기술 연구, 압수·몰수 등 범죄수익 환수방안* 강구 등 범죄대응체계도 구축(검찰·경찰)
 - * 현재는 가상통화 취급업자 계정 동결 후 암호키 저장매체 압수, 수사기관의 가상지갑에 이체하여 압수 등으로 실무적으로 운용

< 최근 가상통화 관련 국내 범죄 단속 사례 >

-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거래한 美 한인갱단, 국내 판매업자 등 71명 검거('17.5월)
- 불법음란물 사이트 개설 후 회원(121만명)으로부터 이용요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운영자 8명 검거, 범죄수익(216 비트코인) 압수('17.5월)
- 가상통화인 '원코인'에 투자하면 최고 10배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70억원을 수신한 원코인 판매업체의 그룹장 등 5명을 방문 판매법 위반죄로 구속기소('17.6월)
- 가상통화 '헛지비트코인'을 구입하면 6~7개월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기망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35,000여명으로부터 1500여억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를 사기죄 등으로 검거('17.8월)

② 해킹 등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철저한 조사·제재 (방통위 등)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 중심으로 해킹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 *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 의무 등을 지님
- 조사결과에 따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
- *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조치 불이행으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 보호조치 미이행과 개인정보 유출간 인과관계 입증시 벌칙 적용 가능
-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하여 전산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
- 시범운영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참여를 지원(방통위)하고, 업체 수요가 있을 경우 전산보안 컨설팅, 취약점 점검 등도 지원(인터넷진흥원)

③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체계 구축 (금감원·공정위 등)

- 금감원이 은행권 협조를 통해 은행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현황을 조사하고 자율규제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 또한, 금감원은 파악한 가상통화 취급업자 정보를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에 통보하여 상시 공유
- 취급업자 - 경찰 - 금감원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심 정보를 공유
- 공정위는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검토
- 국세청은 공유자료를 토대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사업소득 등 과세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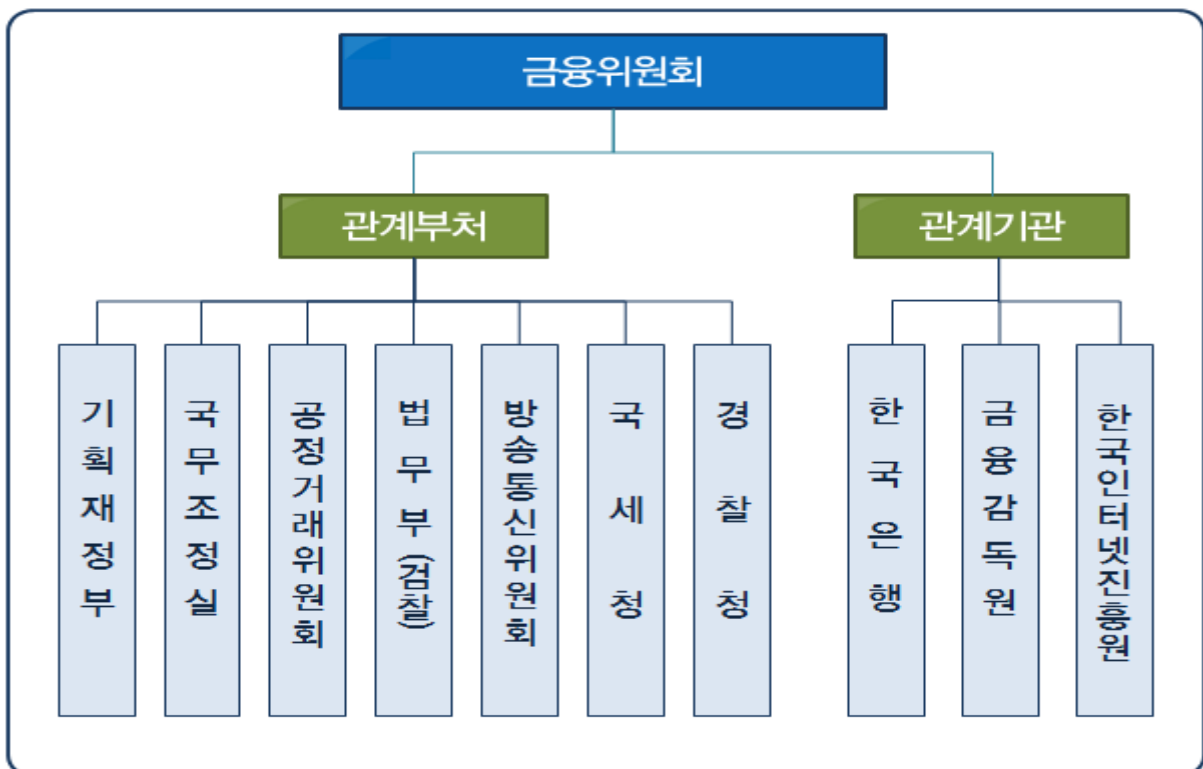
3. 규제·감독 문제 검토

-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

V. 향후 계획

- 관계기관 합동 TF(주재: 금융위 부위원장)* 구성·운영
 - 기존 가상통화 실무 TF를 확대하여 국조실, 공정위, 법무부(검찰), 방통위, 국세청, 경찰 등도 참여(관계기관 국장급)
- * 분기별로 개최('17.9월, '17.12월)
- 관계기관 실무점검회의(주재: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를 매달 개최하여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

<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조직도 >



추진과제	필요조치	소관	추진일정
1. 거래 투명성 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 단기 실행방안 >			
①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 등 거래투명성 강화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강화,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를 강화	금융위, 금감원, 은행 등	'17.12월
②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시 거래투명성 확보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모니터링 거래투명성 강화	기재부, 한은 등	지속
③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부과 추진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 국내거래에 대한 규제도입 추진	금융위	지속
④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율규제 마련 권고	소비자 보호사항을 자율 규제안에 반영 권고	가상통화 취급업자, 금융위·원	'17.하반기
<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			
⑤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처벌 근거 명확화 등	금융위	지속
⑥ 가상통화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가상통화거래행위 규제	금융위	지속
2.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① 「가상통화 합동단속반」 구성 등 범죄 단속·처벌 강화	가상통화 관련 사기 범죄 집중단속, 범죄 대응체계 구축 등	검찰, 경찰, 금감원, 공정위	지속
② 해킹 등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철저한 조사·제재	고객정보 유출사고 조사·제재,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지원 등	방통위, 인터넷진흥원	지속
③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체계 구축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조사 및 정보의 상시 공유 등	금감원, 공정위 등	'17.10월
3. 규제·감독 문제 검토			
①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금융업 규제 여부 검토	시장 추이, 각국 제도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대응방안 마련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	지속
② 가상통화 관련 과세문제 검토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과세 문제 검토	기재부	지속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 생산적 금융
- 신뢰받는 금융
- 포용적 금융

보도 배포시 배포 2017.9.29(금)

책 임 자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주홍민(02-2100-2970) 금융위 FIU기획협력팀장 손성은(02-2100-1730)	담 당 자	김민하 사무관 (02-2100-2972) 이영민 사무관 (02-2100-1722)
	국조실 금융정책과장 이동엽(044-200-2190)		김정훈 서기관 (044-200-2191)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고광희(044-215-2750) 기재부 외환제도과장 이형렬(044-215-4750)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송진혁(044-215-4230)		김채윤 사무관 (044-215-2758) 유예림 사무관 (044-215-4751) 조윤석 사무관 (044-215-4232)
	공정위 특수거래과장 한경종(044-200-4430)		정은애 사무관 (044-200-4438)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박성훈(02-2110-3167)		김봉진 검사 (02-2110-3759)
	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천지현(02-2110-1567)		황선철 사무관 (02-2110-1525)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한경수(044-204-3202)		김필식 사무관 (044-204-3222)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장우성(02-3150-1605)		김상순 팀장 (02-3150-0252)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차현진(02-750-6615)		김정규 팀장 (02-750-6639)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 최성일(02-3145-7420)		김용태 팀장 (02-3145-7425)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대응센터장 김주영(061-820-1830)		윤석웅 팀장 (02-405-5563)

제목 :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개최

- ◆ 오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를 개최
 - ◆ 최근 국내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지난 9.1일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 추진현황을 점검
- 〈 최근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 〉
- ✓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금지
 - ✓ 금전대여·코인마진거래 등 신용공여 금지(현행법상 위반여부 조사·제재) 및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 전면차단
- 〈 추진현황 점검 〉
- ✓ 「가상통화 합동단속반」 구성, 집중단속 실시중
 - ✓ 고객정보 유출사고 조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체계 구축
 -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 등 관련법 개정안 마련

I. 회의개요

□ 금일 '17.9.29.(금) 10:0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

* 금융위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은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 최근 국내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지난 9.1일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의 관계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

II. 주요내용

□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

□ 또한, 최근 시중자금이 비생산적·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 이에 따라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 다음과 같은 대응방침을 논의함

1. 최근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

① (ICO 금지) 디지털토큰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ICO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① 지난 9.1일 관계기관은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침을 발표

② 그러나, 실제 ICO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속칭 '증권형')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속칭 '코인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 중국('17.9.4일)·미국('17.7월)·싱가포르('17.8월) 등 주요국에서도 **ICO** 관련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경고를 발표하는 등 ICO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

< 주요국 ICO 규제 사례 >

- 미국 증권거래위(SEC)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토큰발행을 증권법상 증권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17.7월)
- 중국 인민은행 등은 ICO를 금융사기·다단계 사기와 연관되는 불법 공모행위로 규정하고, **ICO의 전면금지** 발표('17.9.4일)
- 싱가포르 통화청(MAS, '17.8월), 홍콩 금융감독원(SFC, '17.9.5일)도 증권발행 형식의 **ICO**의 경우 증권법에 따른 규제방침을 발표
- 미국 증권거래위(SEC, '17.8월), 싱가포르 통화청(MAS, '17.8월), 말레이시아 증권위(SC, '17.9.7일), 영국 금융감독청(FCA, '17.9.12일) 등은 ICO 관련 투자경고

② (신용공여 금지) 소비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속칭 '코인 마진거래')하는 등 사실상 신용공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됨

- 이와 같이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행위는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큼

➔ 지난 9.1일 대책에서 밝혔듯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 규제입법 이전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시 업정 제재할 계획

- 한편, 가상통화의 투기적 거래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취급업자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을 금지(관련 실태조사 추진)

-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업에 제도권 금융회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2. 추진현황 점검

- ①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처벌)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거래, 유사수신·다단계 사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각각 마약류관리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방문판매법 위반 등으로 기소(검찰)

< 가상통화 관련 최근 범죄 기소사례 >

- '17.5~8월 '00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12억원을 편취한 업자 등 4명을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로 기소('17.8~9월)
- '16.8월~'17.8월 대마 1.25kg을 70여회에 걸쳐 비트코인으로 판매한 업자 등 4명 구속기소('17.9월)

- 「가상통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가상통화 관련 다단계·유사수신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주만에 10건 적발, 20명 검거(9.1~9.15일, 경찰·금감원)

< 가상통화 관련 최근 검거사례 >

- 매출실적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며 실물거래가 되지 않는 가상통화 판매 명목으로 투자자 1,000명으로부터 250억 상당을 수신한 무등록 다단계 상위사업자 등 4명 검거(구속 1명)

- 경찰청(17개 지방청)·금감원(11개 지원)간 지역별 핫라인을 구축하여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다단계공제조합(직접판매·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설치하는 등 집중제보기간을 운영중(7.24일~)이며, 현재까지 제보된 범죄혐의가 있는 4개 업체를 신속히 수사의뢰(공정위)

- ② (고객정보 유출사고 조사제재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제재하고, 보안조치 강화 유도(방통위)

- 신고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조사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및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가능

-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9월말~, 방통위·과기정통부 공동)

③ **(이용자 확인)**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프로세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율규제(안) 마련** 관련 의견을 수렴
(9월 중순, 은행권·가상통화 취급업자 합동 회의 개최, 금감원)

*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 가능하도록 통제, 이용자 1인 1가상계좌 부여 원칙 적용, 은행의 가상통화취급업자 실사기준 마련 등

** 은행권 등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20여개로 (잠정)파악하였으나, 추가 검증·지속 보완 필요

④ **(유사수신 등 규제)**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행위 규제 명확화, 처벌 강화를 위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 마련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금융위)

○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조항 정비·확대,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및 몰수·추징 규정 신설

○ '가상통화거래행위*'를 규정하고, **ICO·신용공여·시세조종·표시광고** 등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

* (예)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가능한 증표를 발행·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행위

➔ 유사수신행위등규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⑤ **(자금세탁방지)** 은행권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계좌개설·고객확인 현황 및 의심거래 유형을 추가로 파악하고(금융위),

- 은행권에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를 강화하도록 지도**(공문시행, 9.28일)

○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집금계좌를 발급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테마검사도** 실시할 예정('18.1월, 금감원)

○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연내 국회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 ⑥ (공동점검체계 운영) 금감원이 조사한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과 상시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 구축
- 은행권 협조를 통해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1차 조사하고, 파악된 정보를 공정위·국세청 등에 통보(금감원)
 - ➔ 향후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완료시 취급업자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12월)
 - 우선 대형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심사하고 시정할 예정(공정위)

※ 별첨 : 가상통화 거래 유의사항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p>	<p>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p>	 <p>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p>
--	---	--	--

① 매우 큰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

- 가상통화는 그 가치가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정부·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
- 또한,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가격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본인의 책임 하에 거래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②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에 주의

- 최근 유사코인 투자시 고수익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
- 비트코인 등 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반면,
-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고수익을 약속하며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기업체이며,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요망됨

* 수원지방검찰청 배포 보도자료 참조('16.6.20일, '16.7.27일, '17.6.22일)

③ 해킹 및 암호키(Private Key) 유실 위험에 노출

- 이용자가 가상통화를 직접 보관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는 경우에도 가상통화 보관지갑 해킹으로 이용자자산이 탈취될 위험이 존재함
- 또한, 가상통화 거래시 필요한 암호키(Private Key)가 유실되는 경우 해킹 없이도 이용자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음

